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3나224417 판결 [건물명도 등]

---

## 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4. 10. 31 선고 2023나224417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3. 10. 31 선고 2022가단139191 판결

## 전문

**원고, 항소인**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

**피고, 피항소인**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

담당변호사 강동원, 김유경, 노영실, 김경섭

**변론 종결**2024. 8. 22.

**판결 선고**2024. 10. 31.

**제1심판결**대전지방법원 2023. 10. 31. 선고 2022가단139191 판결

## 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2023. 1.

1.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,9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표 아래 제3행의 "C종중은"을 "G종중으로부터"로, 제4~5행의 "F지역주택조합은"을 "F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"로 각 고치고, 제5행의 "신탁을 원인으로" 다음에 "한"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"그치지는"을 "그치는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"임차인"을 "임대인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의 "있다고"를 "있다고 볼"로 고친다.

**재판장판사설승원**

**판사윤지숙**

**판사신일수**

**별지**